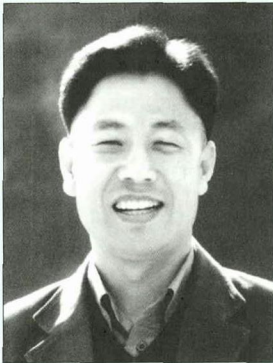


‘권리’로서의 노숙인 복지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도홍 교수



許基福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목사, 원주 밥상공동체 대표
예정희망의쉼터협의회 회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운영위원

철원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새도래지이다. 수많은 철새가 철원을 찾아 겨울을 나고 세계 각지로 날아가 여름을 보내며 다시 이곳 철원으로 찾아온다. 참으로 신기하다. 해마다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철새들에게 철원은 곧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노숙인들은 철새만도 못할 때가 많다. 자신의 몸 하나 가늠 터전을 갖거나 찾지 못하고 그저 하루 하루를 연명한다. 거리에서, 역전 대합실에서, 지하도에서..... 물론 쉼터에서 생활하기도 하지만 쉼터도 잠시 머무는 곳일 뿐, 진정한 대안은 아니다.

그런데 그 쉼터마저도 최근 쉼터 통폐합 및 전원조치, 미신고시설 신고제,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중 개정령안 등의 이유로 존립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물론 이런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정부의 발상에 전실노협을 비롯 예정 총회사회부, 지역 쉼터협의회 등의 거센 항의로 지난 8월 한발 물러섰긴 했지만 언제 또 메스를 댈지 모른다.

이러한 당면 문제 속에 『보건복지포럼』에서 ‘노숙인 지원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

과 대안이 제기되어 내심 반기면서 먼저 다 음과 같은 방향으로 '노숙인 복지체계'가 이 루어졌으면 한다.

하나, 노숙인 정책과 복지사업은 시혜적· 임시구호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복지는 '책임과 나눔을 공유하는 최소한의 장치'이 지, '최대한의 시혜를 베푸는 은총'은 아니다. 여기에 노숙인이라고 해서 제외는 아니다. 사 실 노숙인 보호사업은 경제위기라는 긴급 상 황에서 나오긴 했지만 노숙인 문제는 어 느 국가, 어느 사회 이건 존재하는 사회 문제이다. 동시에 주 거불안 계층 내재, 빈곤 고착화,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감안한 다면 노숙인 문제는 응급처지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좋은 삶든 노숙인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 해야 될 사회 문제라는 인식 없이는 바람직 한 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 특성을 지녔다고 본다.¹⁾

하나, 민·관 파트너십 강화와 연계체계를 복원해야 한다. 경제위기 이후 거리노숙인이

쏟아져 나오면서 민간과 정부는 함께 이 문 제에 접근했고, 이어 노숙인 집중상담, 밥 나 눴(급식), 의료서비스, 취업안내 등의 다양한 노숙인 정책을 펼쳐왔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 을 확보하고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단 기간에 응급구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전례 없는 일을 창조해 냈다.²⁾ 그런데 2002년 현재 의 모습은 민간과 정부간의 인식차이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너희는 따라와라 예산은

우리가 쥐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일관하 려 하니, 그동안 어 렵게 구축한 파트너 쉽은 물론이고 노숙 인 정책 후퇴, 서비 스 약화, 심지어 대 선과 맞물려 정치권 의 눈치까지 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1998년 초심으로 돌아가 민·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복원해야 한다.

하나, 노숙인 특성에 따른 복지서비스와 전 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애초 노숙인 사업 은 수용보호에서 자활지원으로 전환되었기에 부랑인보호사업과는 엄연히 차이가 나고, 또

노숙인의 삶과 생활이 어떻게 투영되고
비치든 간에, '차별과 배제' 보다,
'그들도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사람들'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1)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 체계 속에서의 노숙인 복지(지원사업)의 방향』, 『HOMELESS』 가을 2002, p.18.


2) Ibid.,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의견서』, p.30.

부랑인복지시설에 편입시키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상담 과정에서 건강 진단 및 사정을 거친 후 장기보호 대상자는 부랑인시설로, 단기보호 및 자활 대상자는 노숙인 복지시설로 보내는 연계망 형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거리노숙인의 생활위기나 보호를 위해 이용보호시설(Drop-in Center)을 설치하여 의료, 상담, 세탁, 목욕, 취업정보 제공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³⁾

하나, 현실성 있는 예산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 사실 1,026원이라는 급식비(1일 2끼), 공공요금도 내기에도 빠듯한 운영비, 쉼터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14시간 심지어 24시간 쉼터에서 생활하고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정도 밖에 안되는 보잘 것 없는 인건비의 지원 등은 너무나 비약하기만 하다. 그리고 반대로 예산지원이라는 이유로 쉼터를 임의적으로 통제·관리하려고만 한다. 그것도 예산집행을 적시에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하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 담

당자의 복지의식에 따라 늘 노숙인 정책은 유동적이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도 지방 정부에 의해 묵인·방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잘못보다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상설화된 민·학·관 가칭 ‘노숙인복지정책협의회’를 속히 구성해야 될 것이다. 이리하여 쉼터 유형화 및 전문화, 바람직한 제도개선, 제도화 등 노숙인 복지사업의 중단기적 정책수립 등을 심층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끝으로 그동안 변방의 복지에서 일해 온 한사람으로서 느낀 결론은 노숙인의 삶과 생활이 어떻게 투영되고 비치든 간에 ‘차별과 배제’보다 ‘그들도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사람들로’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숙인도 국민이다’라는 인식아래 ‘권리’로서 노숙인 복지를 생각하고 그런 틀을 공론화시켜가는 장(場)이 본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점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3)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노숙자복지서비스 체계구축방안』 2000, p.68.